



| FCPA 규제①

NS홈쇼핑 딜 위기 물고간 '미국법' 있었다

거래관계자들 FCPA 두고 한달간 협상 공방...규제 몰이해 원인

윤동희 기자 | 입력 2013-01-09 08:00:00

[달기](#) [프린트](#)

키워드 [FCPA](#) [하림](#) [블랙스톤](#) [우리](#) [PE](#)

지난해 말 하림의 NS홈쇼핑 지분 투자를 준비 중이었던 우리블랙스톤 사모투자전문회사(PEF)는 생각치도 못한 난관에 봉착했다. 뜬금없이 미국의 해외부패방지법(Foreign Corruption Practices Act·FCPA)라는 규제가 발목을 잡은 것.

투자자, 특히 블랙스톤 측은 NS홈쇼핑이 FCPA를 준수하길 요구했다. 과거 부패사실이 불거지면 하림 측에서 사후보장도 해주라는 조건이었다. 피투자회사는 왜 미국법을 준수해야 하는지, 외국법에 의거해 과거문제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지 납득할 수 없었다. 국내 투자사인 우리PE도 당혹스런 입장이었다.

FCPA는 미국법으로 외국의 공무원들에 뇌물을 주는 행위를 방지한다는 내용이다. 물론 국내에서도 뇌물은 불법이기 때문에 FCPA가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것은 지켜지고 있는 사항이긴 하다. NS홈쇼핑도 관련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투자자들 사이에서 왜 국내 업체가 미국법의 제재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부터 시각 차가 벌어진 게 문제였다.

이 문제가 거론됐던 거래 초반에는 단순히 블랙스톤이 유독 까다롭게 구는 것 뿐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당시 한 관계자는 "거우 김홍국 회장의 마음을 붙잡았는데 블랙스톤 본사측에서 괜한 것으로 트집을 잡는다"며 "거래가 틀어지게 생겼다"고 불멘소리를 냈다.

거래는 결국 성사되긴 했지만 협상을 결렬위기까지 몰고간 원인이 흥미롭다. 결론적으로 평가하면 문제의 원인은 FCPA에 대한 국내사들의 이해가 부족한 데 있었다. FCPA는 블랙스톤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FCPA의 적용 대상은 일반이 생각하는 범위보다 훨씬 넓다. 일단 현지법인뿐 아니라 미국 상장사(ADR 포함)까지 포함한다. 이런 규정에 따라 거래 초반, FCPA 규정에 생소해했던 우리PE도 블랙스톤과 똑같은 문제에 직면해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우리PE의 대주주인 우리금융지주가 뉴욕증권거래소 상장사이므로 FCPA 규제 대상이 되기 때문. 우리PE도 블랙스톤만큼 까다롭게 굴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여기에 FCPA 실무적인 해석에 따라 FCPA 적용 대상자들이 인수합병(M&A)을 진행한다면 피투자회사의 부패 관련 책임을 승계해야 하는 의무도 있었다. 피투자회사가 과거에 행했던 어떤 행위나 차후 부패 사실로 판명날 경우 관계자들이 모두 처벌을 받게 된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FCPA의 규율을 받는 블랙스톤과 우리PE가 NS홈쇼핑에 들어옴으로써 홈쇼핑 또한 규제를 받게 된 셈이다.

FCPA 문제로 한달 동안 정지됐던 거래는 우리PE, 하림 측 모두가 블랙스톤과 같은 입장에 서게 된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됨으로써 성사됐다. 다만 뇌물제공 행위나, 공무원 규정범위 등 세부 내용에

있어서는 국내법과 영미법간 해석 차이가 있기 때문에 준거법을 영미법이 아닌 국내법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가 어렵사리 타결되긴 했지만 FCPA 적용대상이 일반이 예상하는 범위보다 넓기 때문에 국내 자본시장 관계자들도 관련 규제에 밝아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었다는 지적이다.

< 자본시장전문미디어 'thebell' >

| FCPA 규제②

한국기업, 어디까지 FCPA 처벌대상?

JV파트너 부정 시 공동 책임...M&A 시 승계의무도 있어 주의 요구

윤동희 기자 | 입력 2013-01-09 08:01:00

달기

프린트

키워드

[FCPA](#)[반부패방지](#)[뇌물](#)[우리PE](#)[블랙스톤](#)[하림](#)

해외부패방지법(Foreign Corruption Practices Act·FCPA)은 말 그대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기업들이 미국 밖에서 기업활동을 하면서 부패에 연루되지 않도록 규율하는 내용을 담은 법이다. 징벌금이 높은 수준인 데 반해 규제 내용은 애매하게 기술돼 있어 각별히 주의가 요구되는 규제다. 특히 이 규제는 미국에 본사를 둔 회사들 뿐 아니라 다국적 기업들, 투자자들에게도 적용이 되는 특이점이 있어 국내사들도 이해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FCPA는 미국 법무부(DOJ)와 증권거래위원회(SEC)에서 최근 처벌 수위를 높여 수사하고 있는 규제다. FCPA의 메인 규정인 반부패규정(Anti-Bribery Provision)은 기본적으로 미국 기업이 외국 공무원에 뇌물을 지급했을 때 제재를 가한다는 내용이다. 여기서 공무원이라 함은 실제 공무원 외에도 국영기업체, 국가 대행기관, 공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기업 등의 직원을 모두 통칭한다.

◇ 미국 증시 상장사 모두 FCPA 적용...자회사의 부패행위도 모회사 공동책임

미국법이긴 하지만 이 법을 적용받는 대상은 순수하게 미국 국적을 가진 기업만이 아니다. 미국 현지법인인 물론 ADR를 발행해서 미국 증권거래소에 정기 보고의무가 있는 국내 기업들도 FCPA 적용 대상이다.

여기에 미국 법인과 이메일을 주고 받았거나 미국 은행 계좌를 통해 뇌물을 지급하는 행위를 했다면 미국 증시 상장사나 현지 법인이 아니더라도 FCPA를 적용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국내회사가 제3세계의 공무원이 보유한 스위스 계좌로 뇌물을 송금하는데 미국 은행을 중개은행으로 거쳐 갔다면 미국의 통신망, 은행전산망을 이용했다는 이유에서 처벌 대상이 된다.

부패문제에서 당당하다고 자처하는 대기업들이나 투자자들이더라도 FCPA를 조심해야 한다. 자회사, 주요지분을 보유한 피투자회사의 책임까지 부담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규정이 명확하지는 않지만 현재까지 이뤄진 FCPA 사례들에 따르면 모회사가 실무상 책임을 함께 부담하는 식으로 규제당국과 합의를 하는 경우가 흔히 있었다. 자회사의 부패 행위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거나 관련사실을 인지하고 있지 못했더라도 말이다.

투자 이후 뿐 아니라 투자 전의 부패 사실에 있어서도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도 있다. FCPA의 M&A 승계의무 때문이다. DOJ는 최근 FCPA 안내서를 발간하며 "합병 등에 의해 부채와 책임이 포괄적으로 인수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주식 인수나 자산 양수 등의 경우에도 대상 회사의 FCPA 위반 책임이 승계인에도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미국계 PEF가 투자한 국내 기업이 관행처럼 공무원에 뇌물을 지급해 왔는데 이에 대한 FCPA 실사(Due Diligence) 등을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알면서도 투자를 했다면 과거 부패 사실에

대한 책임을 현재 주주인 미국계 PEF가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반대로 한국기업이 해외에서 FCPA 적용대상 회사에 투자할 때도 마찬가지로의 이슈를 주의해야 한다.

◇ 합작투자시 파트너 FCPA 적용대상이라면 주의...DOJ·SEC 수사망 넓어

심지어 FCPA는 합작투자(JV) 중에 미국계 파트너가 부정을 저질러 처벌을 받으면 다른 투자자들이 미국과 전혀 관련되지 않은 법인이라도 공범으로 함께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011년 JGC라는 일본 플랜트 엔지니어링 회사가 2억1880만 달러의 징벌금을 받은 사례가 대표적이다.

상위 10대 FCPA 벌금 순위				
순위	회사명	국적	징벌금 (달러)	연도
1	Siemens	독일	8억	2008
2	KBR/ Halliburton	미국	5억7900만	2009
3	BAE	영국	4억	2010
4	Snamprogetti Netherlands B.V./ ENI S.p.A	네덜란드/ 이탈리아	3억6500만	2010
5	Technip S.A.	프랑스	3억3800만	2010
6	JGC Corporation	일본	2억1880만	2011
7	Daimler AG	독일	1억8500만	2010
8	Alcatel-Lucent	프랑스	1억3700만	2010
9	Magyar Telekom/ Deutsche Telekom	헝가리/ 독일	9500만	2011
10	Panalpina	스위스	8180만	2010

출처: 법무법인 세종 오택림 변호사 '미국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에 관한 연구' (법조, 2012.5.)5

1995년 미국, 이탈리아, 프랑스, 일본 등 여러 국가의 투자자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나이지리아에서 진행된 '보니 아일랜드'라는 플랜트 프로젝트 입찰에 참여했다. 2002년 프랑스 검찰이 자국 기업을 상대로 뇌물 조사가 들어갔고 이 소식을 접한 DOJ와 SEC가 2년뒤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한 미국회사들을 대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흥미로운 점은 이들 기업과 함께 일본 증시에만 상장돼, 미국법인도, ADR발행기업도, 미국영토의 전상망을 이용하지 않았던 일본기업 JGC가 공범이론에 걸려서 최종적으로 과징금을 맞았다는 사실이다. 이 같은 사례에 비춰 단순히 기업 운영에서뿐 아니라 해외투자에 있어서도 파트너가 FCPA 적용대상이라면 공동투자자들 모두 규제를 받을 정도로 법 규제 대상이 넓다는 지적이다.

종종 DOJ와 SEC가 세계 각국의 뇌물 혐의를 수사하는 데 물리적인 제한이 있지 않겠냐는 질문이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들 규제당국이 수사 대상을 포착하는 데 한계는 크지 않다는 게 변호사들 설명이다. 일반적으로 FCPA가 부패 사실을 접수하는 방법은 '자수'하는 경우와 '내부고발(Whistle-blower)', 외국 검찰과 공조하는 방안 등이 있다.

자발적으로 부패 사실을 신고하면 형량을 감면해주기 때문에 상당수의 기업들이 자수의 길을 선택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부고발의 경우도 하루에 일곱 건 수준으로 고발 빈도가 높은 것으로 전해진다. 신고인은 징벌금의 10~30% 가량을 보상받는데 통상 높은 수준에서 징벌금 규모가 잡히기 때문에 포상금도 큰 편이다. FCPA 징벌금은 법정형으로 규정된 벌금뿐만 아니라 뇌물로 얻은 이익을 그대로 과징금 규모로 산정하는 '이익 환수금' 기준이 적용되기도 한다. DOJ와 SEC가 해외 뉴스를 접하고 수사에 착수하는 경우도 있어 감시대상에서 벗어나 있다는 기대는 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는 게 변호사들 조언이다.

< 자본시장전문미디어 'thebell' >

| FCPA 규제③

회계 불투명해도 최대 2500만 달러 벌금 폭탄

고의적인 기록 누락시...FCPA 회계규정 미국 증시 상장사들에 적용

윤동희 기자 | 입력 2013-01-09 08:02:00

[썬 달기](#) [프린트](#)

키워드 [FCPA](#) [뇌물](#) [회계규정](#)

미국의 해외부패방지법(Foreign Corrupt Practices Act·FCPA)은 뇌물 방지법으로 불리기도 한다. 공무원들에 뇌물을 주는 것을 엄격하게 처벌하는 법으로 유명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변호사들은 FCPA가 뇌물 제공 행위뿐 아니라 회계 장부관리까지 더 넓은 범위에서 규제를 적용하고 있어 조심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 FCPA 적용기업, 국내법뿐 아니라 관련 규제 따라 회계 장부 관리해야

FCPA는 크게 반부패규정(Anti-Bribery Provision)과 회계규정(Accounting Provision) 두가지로 나뉜다. 반부패 규정은 뇌물 제공 행위를 금하는 것이고 회계규정은 근본적으로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기업들에 회계처리를 정확하게 하고 내부통제 시스템을 수립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반부패규정이 사후 행위에 초점을 맞춘다면 회계규정은 부패를 사전에 통제하는 쪽에 가깝다. 반부패규정 적용대상은 미국 증시 상장사와 현지법인, 미국 영토내에서 부패를 저지른 기업들 등으로 범위가 넓지만 회계규정 적용 대상은 상장사(Issuer)로 한정돼 있다.

미국 상장사라 함은 주식(ADR포함)이 거래소 등에 상장되어 있거나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정기적인 보고의무를 부담하는 기업들로 대표적으로 포스코, STX팬오션, 신한금융지주, KB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한국전력공사, SK텔레콤, KT가 있다. 이들 기업이 지분 50% 이상을 보유한 자회사들도 동일하게 회계규정을 적용 받는다.

오타퀀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에 따르면 이 회계규정을 위반한다고 바로 형사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FCPA는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만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FCPA가 요구하는 수준이 더 까다로워 국내기업들이 회계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비자금을 조성하는 것 자체로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 나아가 비자금을 사용한 용처까지 밝혀져야 업무상횡령이나 뇌물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하지만 FCPA에 따르면 구체적인 사용처가 밝혀지지 않더라도 변칙회계처리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였다면 그 자체로 고의적인 회계규정 위반이 될 수 있다. 나아가 국내 회계처리 기준을 지켰다고 하더라도 비용과 관련된 전표처리나 기장과정에서 세부내역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았다면 그 역시 고의적인 기록 누락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회계규정 위반시 법정형 최고 260억 원...사내에 반부패 컴플라이언스 도입필요

일단 형사처벌 대상이 되면 사태가 심각하다. 법정형 자체가 매우 높기 때문. 단 하나의 회계규정 위반으로 개인의 경우 최고 500만 달러의 벌금과 최장 2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고, 기업의 경우에는 최대 2500만 달러까지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따라서 장기간에 걸쳐서 여러 건의 회계규정 위반 사실이 발각되면 위와 같은 벌금이 계속 쌓일 수 있다. 반부패규정 위반과 함께 고의적으로 회계규정 위반을 했으면 반부패규정에 따른 벌금과 규모가 합쳐지므로 벌금액이 더 높아진다는 분석이다.

FCPA는 회계 처리 외에도 사내 규제를 통해 내부적으로 부패 행위를 통제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물론 내부통제 시스템이 미비하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회계처리와 마찬가지로 고의적으로 내부통제 시스템을 회피하거나 불이행할 경우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하지만 국내 기업들의 경우 이벤트 성으로 컴플라이언스 문제에 접근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변호사들은 설명하고 있다.

< 자본시장전문미디어 'thebell' >

thebell interview | FCPA 규제④

"FCPA, 美 반독점·특허소송 잇는 새 무기"

세종 오택림 · 류명현 변호사 "한국기업 반부패 컴플라이언스 구축 필요"

윤동희 기자 | 입력 2013-01-09 08:03:00

[달기](#) [프린트](#)

[키워드](#) [FCPA](#) [세종](#) [부패](#) [뇌물](#) [회계](#) [M&A](#) [규정](#)

최근 미국 검찰이 해외부패방지법으로 불리는 미국의 FCPA(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규정을 강화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한국기업도 미국 검찰로부터 처벌받을 수 있다. 징벌금 수위도 몇 천억 원대로 높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국내사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FCPA 관련 이슈가 커짐에 따라 법무법인 세종은 관련 팀을 새로 신설했다. 대검찰청 중수부 등에 근무했던 오택림 변호사 등을 내세워 FCPA, 내부조사(internal investigation) 분야에 전문적으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10여 명 내외로 팀 규모는 사건 규모에 따라 유동적으로 구성하고 오택림 변호사와 류명현 선임외국변호사가 관련 사안을 전담할 예정이다.

세종이 이 같은 팀 구성에 나선 이유는 FCPA가 미국의 새로운 다국적 기업 규제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FCPA는 간단하게 설명하면 해외에서 기업들이 외국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지 못하도록 하는 법이다.

문제는 여기서의 '기업'은 미국 현지 법인만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는 데 있다. 규제당국은 법 적용 대상을 미국에 상장된 외국기업에 확대하고 있다. 즉 예탁증서(ADR)가 발행된 국내기업들도 직접 법 적용 대상이 되기 때문에 주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나아가 미국에 상장된 기업이 아니더라도 범행의 전부 또는 일부가 미국 영토에서 이루어진 경우 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범위는 생각 보다 훨씬 넓다고 할 수 있다.

특히 FCPA는 1977년 제정된 오래된 법이지만 미국 법무부(DOJ)나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최근 들어 이 규정을 적극 활용하기 시작했다. 삼성이나 코오롱 등 미국에 진출한 기업들이 직면하고 있는 반독점 소송, 특허 소송처럼 한국기업들이 새로 직면할 법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법무법인 세종 오택림 변호사(좌)·류명현 선임외국변호사(우)

오택림 변호사는 "FCPA가 제정된 지 36년이 지났지만 최근 5년 동안의 FCPA 의율(당국이 법규를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하는 일) 건수가 그 전 31년 동안 의율된 건수를 모두 합친 것보다 훨씬 많다"며 "다국적 기업을 상대로 특허 소송이나 반독점 소송을 제기하는 것처럼 FCPA 등 반부패 규제가 새로운 트렌드가 됐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FCPA로 의율돼 가장 높은 금액의 징벌금을 낸 상위 10개 기업 중 9개 기업이 외국 기업이다. 2008년 독일 기업 지멘스에 8억 달러(약 8500억 원)가 부과된 것을 비롯해 2011년에는 JGC라는 일본 기업에 약 2억2천만 달러가 부과된 것 등이 있다. 미국이 외국 기업에 매우 공격적으로 FCPA를 적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는 미국 기업에 대해서만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을 금지할 경우 국제상거래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을 수 있다는 생각에 오히려 외국 기업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율을 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더 나아가 FCPA가 외국 기업 견제를 하기 위한 신 보호무역주의의 일환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오택림 변호사는 "실제 미국의 의중이 어쨌든, IP나 독점 문제는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 다룰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지만 FCPA와 같은 반부패 문제는 일단 적발되면 명분론에서 상당히 밀리기 때문에 사전에 매우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FCPA의 심각성에 비해 국내 기업들은 이 문제에 대한 위기의식이 크지 않다. 자신들이 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거나 어떤 행위가 FCPA 위반 행위인지 제대로 인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

변호사들은 예를 들어 국내외 제약사들의 리베이트 문제나 개발 도상국에서 관행처럼 일어나는 현지 에이전시를 통한 공무원 뇌물지급 행위 모두가 규제 대상이라고 설명한다. 사회 분위기가 특별히 위법하다고 여기지 않았거나 뇌물 규모가 크지 않다고 해서 안심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DOJ와 SEC는 평소 사내에서 반부패 컴플라이언스(준법감시)를 만들어 철저히 운영하고 있었다면 뇌물 제공 사실이 포착되더라도 벌금 규모를 감면해주거나 아예 처벌을 면하게도 해준다. 기본적으로 뇌물을 건네는 행위가 있어서는 안되겠지만 해당 사실 발각 시 최대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관련 내용을 잘 인지하고 있지 않은 국내 기업들은 준비를 하지 않고 있는

편이다.

류명현 변호사는 "단순히 윤리규정을 만들어 놓거나 이벤트성 교육만으로는 부족하다"며 "모간스
탠리의 경우 중국에서 뇌물 제공 혐의가 포착됐는데 내부적으로 반부패 컴플라이언스 규제를 운용
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해서 처벌을 면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반부패 컴플라이언스 및 내부조
사 실무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자본시장전문미디어 'thebell' >